

## 지구정지궤도의 사적 거래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신홍균\*

### 목 차

- I. 서 언
- II. 지구정지궤도 및 주파수의 등록 제도
- III. 지구정지궤도와 우주물체의 관할권
- IV. 지구정지궤도 분쟁 사례와 2차시장 거래의 법적 지위
- V. 결 언

---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I. 서 언

우주활동의 상업화가 개시된 이래 가장 큰 시장은 위성통신과 방송시장일 것으로 예상되어 왔고 그 시장에 필수 요소인 지구정지궤도를 둘러싼 경합도 예상되어 왔다. 우주공간의 소유 금지 원칙을 비롯하여 지구정지궤도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려는 국제법적 규범들이 이러한 경합을 고려하여 수립된 바 있다.

그러나 지구정지궤도의 시장가치는 국제법 규범을 일탈해서라도 얻는 것이 나올만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개발국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규제의 수혜자인 적도 국가들은 궤도를 정상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나 웃돈을 받아서 팔고 있다. 선점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규제는 선점자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탈법적 행위에 못미치고 있다. 폐기된 인공위성을 사서 기득권을 연장하는 일종의 위장전입이 관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공공주택의 분양제도가 진정한 주택 수요자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낳는 모습이 지구정지궤도에서도 연상된다. 궁극적으로는 지구정지궤도는 공적인 절차를 통한 분양이 아닌 장외 시장에서 시장 원리에 따르는 기업간의 사적인 거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무궁화위성 3호가 국내법을 위반하여 외국 기업에게 매각되었다. 용도 폐기된 인공위성의 단순 판매가 대한민국 관할권의 지구정지궤도의 이용권을 시장에 내놓은 결과로 이어져 관련 당국의 주의를 끌고 있다. 지구정지궤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는 사적인 거래 시장에서의 경제 주체인 기업과 그 기업에 명의를 대여하는 국가와의 다툼속에서 찾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구정지궤도 거래의 국제 공법상의 지위에 대해서 살펴 보고 아울러 지구정지궤도에 대한 국가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1장에서는 지구정지궤도를 관리하는 국제법상 규범을 살펴 보고, 이어서 제2장에서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권리 및 책임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이지자 규범적인 내용에 기초하여 제3장에서는 지구정지궤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거래 사례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 II. 지구정지케도 및 주파수의 등록 제도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이하 “ITU”라 칭함)은 유선과 무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을 통한 국제적 평화와 발전을 증진함을 목표로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이다. ITU의 주요 기능은 자국내 통신에 관한 주권을 갖는 각국간의 통신 원활화를 위해서 통신 표준을 정하고, 특히 무선통신을 저해하는 유해한 간섭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및 기술 규격을 제정하고 시행하는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ITU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파수 분배표와 계획을 운용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별 용도를 정하고, 또한 자국내에서만 아니라 타국으로 전파가 진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파 간섭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파수 등록원부(Master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er, 이하 “주파수 등록원부”라 칭함)를 관리할 권리를 행사한다. 주파수 분배표와 계획 및 주파수 등록원부에 대해서 ITU협정(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및 ITU 구성조약(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당사자국가는 ITU가 정하는 무선규칙(Radio Regulations)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sup>1)</sup> 이에 본장에서는 ITU협정, 구성조약 및 무선규칙에 규정된 지구정지케도 및 주파수 관리의 일반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지구정지케도 및 주파수 관리의 일반 원칙

#### (1) 지구정지케도 및 주파수 자원에서의 공평한 접근 원칙

ITU 구성조약 제44조와 무선규칙 전문은 주파수와 지구정지케도가 한정된

1) ITU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는 지난 1998년 ITU 구성조약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무선규칙에 대한 당사국의 준수 의무를 확인한 바 있다.

“The provisions of both this Constitution and the Convention are further complemented by those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enumerated below, which regulate the use of telecommunications and shall be binding on all Member States: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 Radio Regulations.”

천연자원이며 그 사용은 합리적, 효율적 및 경제적이어야 하고 모든 국가들이 공평한 접근(equitable access)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sup>2)</sup>

지구정지궤도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은 구체적으로는 무선규칙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구현된다. WRC-03에서 채택된 Resolution 2의 제1조는 무선통신사무국(“the Radiocommunication Bureau”, 이하 “사무국”이라 칭함)에의 주파수 등록 및 그 사용은 해당 국가에게 영원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타국의 위성망 수립에 장애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 및 사무국에 이미 등록된 국가는 새로운 위성망의 수립을 용이하게 할 모든 실무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무국이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선규칙 제9.6조에 대한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은 무선규칙 제9조 전체에서 먼저 신청한 국가가 여하한 우선권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sup>

## (2) 주관청의 무선국 감독 및 통지 의무

ITU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된 기본적 방식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유해한 간섭을 억제하기 위한 ITU 당사국(이하 “주관청”이라 칭함)들의 자발적 노력 및 협조이고 다른 하나는 ITU가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도록 주관청들이 주파수 사용에 대해 통지(notification)하는 것이다.

이에 ITU 구성조약 제6조는 주관청이 유해한 간섭을 막기 위해서 ITU 협정, 구성조약 및 무선규칙을 준수할 의무와 타국에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기

2) ITU 무선규칙 전문

“In using frequency bands for radio services, Member States shall bear in mind that radio frequencies and any associated orbits, including the geostationary-satellite orbit, are limited natural resources and that they must be used rationally, efficiently and economically,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Radio Regulations, so that countries or groups of countries may have equitable access to those orbits and frequencie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need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geographical situation of particular countries.”

3) b) the intent of Nos. 9.6 (9.7 to 9.21), 9.27 and Appendix 5 is to identify to which administrations a request for coordination is to be addressed, and not to state an order of priorities for rights to a particular orbital position;

c) the coordination process is a two way process. This understanding was included in the Radio Regulations by WARC Orb-88 with the adoption of the former RR provision No. 1085A which was confirmed by WRC-97 in No. S9.53 ;

d)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9 no administration obtains any particular priority as a result of being the first to start either the advance publication phase (Section I of Article 9) or the request for coordination procedure (Section II of Article 9).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무선규칙 제15.1조는 모든 무선국은 불필요한 전파의 송신, 허위 또는 오류 signal의 송신, 및 식별정보 없는 신호의 송신을 금지하고 있다. 무선규칙 제15.21조는 ITU 구성 조약, 협약 및 무선 규칙(특히 위의 제15.1조 특히)에 대한 주관청 관할하의 무선국이 행한 위반 정보를 주관청이 갖는 경우에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3) 통지 및 국제등록의무

주관청은 자국 관할권하의 무선국(Radio Station)이 특정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하거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무선국이 특정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ITU에 통지하고 등록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정 무선국이 특정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주관청이 인지하고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주관청에 의한 “주파수 지정”(Assignment)이라고 개념화하여 부르고 있다. 그래서 무선규칙 제11조는 무선국(송신국, 및 송신국과 함께 사용되는 수신국을 포함한 무선국)의 주파수 지정시에 사무국에 통지(Notification) 및 등재(Recording)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의 제1항(Section)은 통지의 절차에 대해서 제2항은 등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1.2조는 통지 대상이 되는 경우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sup>4)</sup> 무선규칙 제11.25

4) 무선규칙 제11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국가의 무선통신업무에 대하여 유해 간섭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주파수인 경우.
2. 국제 무선통신에 사용될 주파수인 경우.
3. 전 세계적이나 지역적 분배계획 또는 할당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주파수인 경우.
4. 전파규칙 제9조의 조정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주파수인 경우.
5. 국제적 인정 획득이 요망되는 주파수인 경우.
6. 주파수분배표 및 전파규칙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주파수에 대하여 해당 국가가 참고목적으로 국제주파수등록원부에 등재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
7. 수신 지구국이나 수신 우주국, 31~31.3GHz 47.2~47.5GHz 및 47.9~48.2GHz 대역을 사용하는 고정업무용 성층권통신시스템무선국, 이동국으로부터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육상국에 대한 주파수 중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 가. 위 2, 3 및 5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건 중의 어느 하나가 수신국에 적용되는 경우.
  - 나. 1~8까지의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송신국에 적용되는 경우.
8. 특정 전파권문국에 의한 수신용으로 사용될 주파수로 국제주파수등록원부에 포함되는 것이 요망되는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주파수에 대하여는 전파규칙 제11조에 따른 국제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1. 전파규칙에 의하여 특정 업무의 지상국에 의한 공통 사용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특정한 주파수를 포함하는 경우로 이런 특정한 주파수는 국제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한

조는 위성망과의 조정이 수반되는 우주업무 및 지상업무에 대한 주파수 지정 통지는 해당 지정이 사용되기 적어도 3년전에 행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5)</sup>

통지된 정보는 무선규칙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심사되고<sup>6)</sup> 등록원부에 등재되며, 이로써 주관청이 자국 영토내 또는 자국 국민에게 전파의 이용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한 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된다. 즉 ITU가 인정하는 국제적 권리와 의무는 주파수 등록원부에 해당 주파수의 지정이 등재됨으로써 성립한다.

등재된 주파수의 권리는 무선규칙 제8.1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범위가 구분된다. 주파수 등록원부에 무선규칙 제11.31에 따라서 긍정적이라고 등재된 주파수 지정은 국제적으로 그 사용권이 인정되는 권리를 갖는다. 타 주관청이 이 주파수에 대해서 유해한 간섭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다만 제11.31조에 따라서 긍정적이라는 의견(finding) 부여 여부에 따라 그 권리의 범위가 조정된다. 또한 조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그러한 권리를 갖는 주관청에 대해서는 그 대역에서 새로 주파수를 사용하려는 주관청이 해당 주관청과 조정 절차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전파 지정이 ITU가 정한 주파수 분배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부적합(non-conforming)으로 등재된다. 이 경우 해당 전파 지정은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지 않는다. 아울러 등재된 주파수의 권리는 무선규칙의 다른 조항들에 따라서 그 행사 범위와 지위가 정해진다.

주파수를 종합하여 수록한 표가 국제주파수목록(IFL)의 서문에 공표됨.

2. 선박국과 타업무의 이동국, 아마추어 업무의 무선국과 아마추어위성업무의 지구국에 대한 주파수와 전파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방송국에 대한 주파수인 경우.
- 5) 11.25 Notices relating to assignments to stations in space services, and to terrestrial stations involved in coordination with a satellite network, shall reach the Bureau not earlier than three years before the assignments are brought into use.
- 6) 무선규칙 제11.31조 내지 제11.34조에 규정된 주요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규칙 준수여부.
  - 타 주관청과의 조정절차 준수 여부.
  - favourable finding을 받고 등재된 주파수에 대한 유해한 간섭을 줄 가능성 또는 그 주파수들로부터 유해한 간섭을 받을 가능성.

#### (4) 사무국 및 규정위원회

ITU구성조약 제14조는 무선규정위원회(the Radio Regulations Board, 이하 “RRB”라 칭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RRB 위원은 회원국들이 자국민들중에서 추천한 자들중에서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에서 선출되며 RRB 위원은 국가를 대표(representing)하여 행동해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한다. RRB의 주요 임무는 절차규칙(the Rules of Procedure)의 제정, 절차규칙의 적용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심의(consideration) 및 주파수의 지정 및 이용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추가 임무의 수행 등이다. 추가 임무는 ITU 이사회(Council) 및 회원국이 참석하는 각종 회의(conference)에 따라 정해진다.

## 2. 지구정지궤도 및 주파수의 신청과 등재

### (1) 사전공표와 조정 개시

인공위성의 제작 기간, 및 전파간섭의 탐지 등의 어려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선규칙은 지구정지궤도 및 주파수의 지정에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 본 통지 및 국제등록 의무 이외에 위성망의 “사전공표”(Advance Publication)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sup>7)</sup>

무선규칙 제9조의 제1항(Section)은 사전공표의 절차와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9.1조에 따라서 주관청은 사무국에 위성망의 “사전공표 정보”를 해당 위성망의 실제 사용(“bringing into use”) 개시 빠르면 7년전에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2년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사전공표 정보는 “위성망의 사용 개시일”(the notified date of bringing into use) 등과 같이 Appendix 4에 나열되어 있는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전공표를 위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사무국이 판단하면 사무국이 그 정보를 회람 형식으로 각 주관청에 공지한다.

무선규칙 제9조의 제2항은 조정(Coordination)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정은 타 주관청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과정을 말한다.<sup>8)</sup> 사전공표된 위성망

7) 무궁화위성의 국제등록에 대해서는 권영모, “The Review of ITU Registration for Koreasat”, 『항공우주법학회지』, 1995년 제7호, 299-320면.

8) A.9.II.2 The word “coordination” as used throughout this Article refers also to the process of

의 영향을 받는 주관청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사전공표한 주관청은 조정을 요청한 주관청과 조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주관청과 조정을 수행할 의무의 대상인 주관청의 판별 기준은 무선규칙 제9.6조에 따른다.

이와 같이 사전공표 정보의 제공과 조정의 개시 등의 행위사실을 총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위성망 신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 (2) 위성망 신청의 유효 기한

무선규칙 제11.44조는 “위성망의 사용 개시일”이 사전공표를 위해 제공된 정보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사무국이 판단하여 접수를 인정한 날(the date of receipt, 이하 “접수 일자”라 칭함)로부터 7년 이내이어야 하고, 7년 이내에 “실제사용” 실적이 없는 주파수 지정은 사무국에 의해서 취소된다(“shall be cancelled”, 이하 “삭제”라고 칭함)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삭제 대상은 후술하게 된 등록원부에 등재된 정보가 아니라 위성망 신청에 포함된 정보이다. 그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해당 위성망 신청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음과 같은 의미이다.

제11.44B조는 위성망의 사용 여부 판단 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면서, 아울러 위성망이 90일 동안 끊임없이 해당 궤도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9)</sup> 제11.48조는 위성망 신청의 접수 일자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위성망 신청 정보가 삭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삭제 사유는 첫째 주관청이 위성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둘째 위성망 사전공표 및 조정의 결과로서 국제 등록을 위해서 사무국에 통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셋째 WRC-12의 Resolution 49에 따른 “필수정보”(due diligence information)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이다. 단 이러한 사유에 따라 삭제하는 경우에 해당 주관청에 사무국이 7년 경과하기 6개월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seeking an agreement of other administrations when required under No. 9.21.

9) A frequency assignment to a space station in the geostationary-satellite orbit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brought into use when a space station in the geostationary satellite orbit with the capability of transmitting or receiving that frequency assignment has been deployed and maintained at the notified orbital position for a continuous period of ninety days. The notifying administration shall so inform the Bureau within thirty days from the end of the ninetyday period.



### (3) 위성망의 등록원부 등재 및 삭제

위성망의 신청과 조정도 제11.31조에 따른 의견(finding)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조정된다. 의견결정을 위한 심사 기준은 사전신청 통보된 위성망이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규칙 조항들을 준수하는가의 여부(11.31조), 조정절차의 준수여부(11.32), 타 주관청에의 유해한 간섭 여부 등(11.33 및 11.34)등이다. 11.31조에 따른 의견이 긍정적(favourable)인 위성망은 주파수 등록원부에 등재된다, 아울러 조정절차에 따른 조정 및 유해한 간섭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주파수 등록원부에의 등재 이후에도 계속된다. 조정이 완료된 주관청의 명단이 주파수 등록원부에 등재된다. 아울러 조정이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의견이 긍정적인 주관청의 명단도 등재된다. 검토 결과가 부정이면 사전 신청은 반려된다.

무선규칙 제13.6조는 사무국이 주파수 등록원부에 등재된 위성망을 삭제, 또는 수정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사무국은 해당 주관청이 등재된 위성망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 또는 사전공표된 위성망 정보(즉 Appendix 4에 따른 정보)에 따른 특성과 달리 운용되고 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주관청과 협의(consulting)하고 위성망의 사용여부에 대해 해당 주관청에 해명(clarification)을 요청하여 확인후에,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10)</sup> 일정 기간동안 해당 주관청이 사무국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 사무국의 삭제 조치는 RRB의 결정에 종속되어야 한다.<sup>11)</sup> 해당 주관청이 불응하거나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RRB가 삭제 또는 수정을 결정할 때까지 사무국의 검

10) 13.6 b) whenever it appears from reliable information available that a recorded assignment has not been brought into use, or is no longer in use, or continues to be in use but not in accordance with the notified required characteristics as specified in Appendix 4, the Bureau shall consult the notifying administration and request clarification as to whether the assignment was brought into use in accordance with the notified characteristics or continues to be in use in accordance with the notified characteristics. In the event of a response and subject to the agreement of the notifying administration the Bureau shall cancel, suitably modify, or retain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entry.

...

11) 13.6 b)

...

If the notifying administration does not respond within three months, the Bureau shall issue a reminder. In the event the notifying administration does not respond within one month of the first reminder, the Bureau shall issue a second reminder. In the event the notifying administration does not respond within one month of the second reminder, action taken by the Bureau to cancel the entry shall be subject to a decision of the Board.

토는 계속된다.<sup>12)</sup> 사무국과 해당 주관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RRB가 사안을 조사하게 되고, RRB는 해당 주관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사무국을 통하여 제출받으며, 특히 그 제출 기한을 RRB가 정할 수 있다.<sup>13)</sup>

이와 같이 위성을 이용하여 지구정지궤도에서 통신 및 방송을 하고자 하는 주관청은 ITU의 등록원부 등재를 위하여 위성망 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타 주관청과 조정 및 합의를 통해서 지구정지궤도와 주파수의 사용 권리를 획득한다.

### Ⅲ. 지구정지궤도와 우주물체의 관할권

제1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구정지궤도와 주파수의 사용 권리는 ITU의 등록 원부에의 등재에 따라서 결정되는 한편, 지구정지궤도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인공위성이다. 이에 인공위성과 해당 인공위성이 위치하는 공간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1. 지구정지궤도에 대한 국가 권리의 법적 지위와 성격

##### (1) 지구정지궤도의 사실상의 점유

1967년 우주조약에 따라 우주공간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야 한다. 특히 ITU 협약은 지구정지궤도를 한정된 천연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국가 영유(national appropriation)를 금지

12) 13.6 b)

...

In the event of non-response or disagreement by the notifying administration, the entry will continue to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Bureau when conducting its examinations until the decision to cancel or modify the entry is made by the Board.

13) 13.6 b)

...

In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the notifying administration and the Bureau, the matter shall be carefully investigated by the Board, including taking into account submissions of additional supporting materials from administrations through the Bureau within the deadlines as established by the Board. (WRC-12)

하고 있다. 이에 국가를 법률 주체로 하는 국제법 질서의 근간인 영토에 대한 주권이 우주공간에서는 부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선규칙에 따라서 지구정지궤도상의 인공 위성은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그 경우 인공위성은 지구정지궤도의 일정한 지점을 점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간섭의 보호를 이유로 일정한 지점이 점유되는 것과 같다는 논리가 타당함은 그러한 점유가 지구정지궤도의 공평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조약 및 결의 등의 각종 국제 문서에 의해서 반증된다.

따라서 우주조약은 우주 공간의 여하한 형태에 위한 주권적 영유를 금하고 있지만 ITU의 협정 및 무선규칙은 사실상의 점유를 허용하고 있다.

## (2) 지구정지궤도 점유 및 이용권의 성격

지구정지궤도는 지구의 자전속도와 지구 적도로부터 32,640킬로미터 높이의 우주공간상의 인공위성의 속도가 같은 지점을 말한다. 두 속도가 같기에 지표상의 특정 지점 위에 인공위성이 항상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구정지궤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의 연료가 사용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정지궤도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궤도이기도 하다.

지구정지궤도는 지표상의 토지와 같이 2차원 평면이 아니며 그래서 한 토지의 소유자는 하나이지만 건축되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공유되는 형식으로 토지가 공동사용되는 것과는 다르다. 지구정지궤도는 3차원의 공간으로서 한 궤도에 여러 인공위성이 위치할 수 있다. 또한 궤도를 둘러싼 실무적 분쟁에서 인공위성의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분쟁의 쟁점인 인공위성을 둘러싼 법률 관계는 특정 지점의 점유가 아니라 위성간의 전파간섭을 둘러싸고 수립된다.

요컨대 지구정지궤도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 아울러 동 궤도를 이용하는 인공위성의 법률관계는 전파간섭을 둘러싸고 논의된다는 점에서 지구정지궤도의 법률관계는 사물에 대한 권리(*jura in rem*)라기보다는 그 궤도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의 권리(*jura in personam*)를 내용으로 수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 2. 지구정지궤도상 인공위성에 대한 관할권

### (1) 무선규칙상 우주국 관할권

ITU 구성 조약 및 무선규칙상 지구정지궤도상의 인공위성은 우주국(Space Station)으로 분류되며 우주국은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국(radio station)에 속한다. 무선규칙은 무선국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어서 전파의 송출을 검사하여 할 주관청(제3.14조), ITU 협약, 구성조약 및 무선규칙의 위반시에 해당 무선국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주관청(제15.20조), 간섭을 주는 무선국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는 주관청 및 간섭을 받는 무선국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는 주관청(제15.31조)에 관한 규정 등에서 무선국이 특정 주관청의 관할권하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규칙은 그 관할권을 갖는 주관청과 무선국과의 연결관계(link)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달리 말하면 해당 주관청이 왜 그 무선국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무선규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주관청과 우주국의 연결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정지궤도의 사전신청 및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무선규칙 Resolution 49에 따라서 주관청이 통보해야 하는 필수정보(due diligence information)에도 해당 주관청이 누구인지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그 연결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 (2) 국제조약상 우주 물체 관할권

지구정지궤도상 인공위성은 1967년 우주조약에 따라 우주물체로 분류된다. 동 조약은 우주물체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과 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 제8조는 우주물체를 발사한 국가가 우주물체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권”(jurisdiction and control)을 갖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우주물체간에 그러한 관할권이 성립하는 연결관계(link)는 우주물체의 등록이다.<sup>14)</sup> 즉 자국의 등록부에 등록된 우주물체가 우주공간에 발사되면 그 물체에 대해서 그러한 관할권을 갖는다.<sup>15)</sup>

14) Guy Lafferranderie, “The United States Proposed Patent in Space Legislation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pace Law*, Vol. 18, No.1, 1990, 6면.

### (가) 관할권 및 통제권의 의의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물체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에 다른 국제 조약 등에서는 “관할권 또는 통제권”(jurisdiction or control)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었다.<sup>16)</sup> 이 두 표현간의 차이가 갖는 의의는 확실상으로도 큰 주목을 받지 않다가, 미국 국내법에서 “관할권 또는 통제권”(jurisdiction or control)이라는 표현이 특허법 및 우주원격탐사 관련 국내법에서 사용되면서 주목받았고, 특히 우주정거장 협정을 위한 미국과 유럽연합간의 협상 과정에서 두 표현간의 차이가 쟁점이 된 바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발명 등에 관한 미국의 이른바 우주 특허법(the Patent in Space Act)에 따르면 미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권”하의 우주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component)에 제조, 사용 또는 판매된 여하한 발명은 미국 영토내에서 제조, 사용, 또는 판매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sup>17)</sup> 유럽연합은 “관할권 또는 통제권”이라는 표현은 미국 관할권만이 아니라 통제권하에 우주물체에 대해서도 미국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는 미국 국내법의 역외 적용이라고 반발하였다. 미국은 유럽연합의 우려 제기에 따라서 추가로 “외국에 등록된 우주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에서 제조, 사용, 또는 판매된 발명은 그 물체 또는 구성부분이 그 시점에 미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권’하에 있더라도, 미국과 등록국간에 국제협정에서 특정하여 동의되지 않는 한 미국 특허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유럽의 동의를 얻었다. 확실은 이는 위의 조항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sup>18)</sup> 이에 우주물체에 대해서 관할권과 통제권은 달리 취급될 수 있다고 인식되었다.

15) 그러나 등록과 발사가 우주물체와 국적 국가간의 “진정한 연결관계”(genuine link)를 구성하는가에 대해서는 선박의 국적 및 항공기의 국적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부정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에 관해서는 von der Dunk, “Towards ‘flags of convenience’ in space?”, *IISL-ECESL Symposium, Vienna (March 2012). Proceedings*, 3면.

16) 예컨대 1982년 UN 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제4장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국가는 자신의 “jurisdiction or control”하의 선박에 대한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7) 35 U.S.C. § 105.

18) Hanneke Louise Van Traa-Engelman, “Commercial Utilization of Outer Space: Law and Practic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299면 ; Mary B. McCord, “RESPONDING TO THE SPACE STATION AGREEMENT: THE EXTENSION OF U.S. LAW INTO SPACE”, 77 *Geo. L.J.* 1933, *Georgetown Law Journal*, June, 1989 참조.

관할권과 통제권이 다른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면, 역으로 1967년 우주조약에서의 “관할권 및 통제권”은 우주물체에 대해서 국가가 관할권과 통제권을 동시에 갖는다고 해석된다. 그 취지는 해상법에서의 국가 관할권 행사 요건을 유추하여 국가가 관할권 행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어서 이 경우에도 “및”(and)을 사용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하려는데 있다고 볼 수도 있다.<sup>19)</sup> 예컨대 1982년 UN 해양법 협약 제91조는 선박에 자국 국적을 부여할 권리와 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인정하고 동시에 제94조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서 해당 국가는 행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관할권 및 통제권”(jurisdiction and control)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1967년 우주조약 제6조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할권 및 통제권”(jurisdiction and control)의 표현을 사용한 제7조는 우주물체를 발사한 국가의 관할권 등의 권리를 규정함과 동시에 적극적 관리 의무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관할권과 국적

1967년 우주조약, 1972년 우주물체의 등록조약 및 1972년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약은 세가지 요소 즉 우주물체, 우주물체의 등록국가, 및 우주물체의 발사국가간의 조합을 통해서 우주물체를 이용하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 우주물체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권”, 우주물체의 등록, 우주물체를 발사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조약, 어느 한 조항도 국적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우주물체의 등록이 사실상의 국적 부여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등록의 명시적인 효과가 제8조에 따라 “관할권 및 통제권”인데, “관할권 및 통제권”이 1982년 UN 해양법 협약의 경우처럼 국적의 부여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은 양분된다.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은 선박이나 항공기와 같이 국적을 갖는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해석된다(mutatis mutandis)고 보는 설과 국적

19)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Space stations and the law : selected legal issues”, Congress, NTIS order #PB87-118220, 1986년, 68면.

부여에 이르지 않는 “관할권 및 통제권”에 한정된다고 보는 설 등이다.<sup>20)</sup> 궁극적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이 우주물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또한 1972년 우주물체 등록 조약의 체약 국가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주물체의 국적 문제는 국내법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지구정지궤도와 우주물체의 편의치적

현행 ITU의 제도에 따라서 지구정지궤도에 대한 국가의 권리는 객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권리 속성을 갖는다. 당사자간에 권리 인정의 요건은 해당 주관청이 ITU에 신청 또는 등록한 인공위성이 해당 궤도와 주파수의 “실제 사용” 실적이 있는가이며 우주물체의 국적국가 여부는 아니다. 그래서 위성의 등록 및 발사 국가와 지구정지궤도 주관청 국가가 일치하여야만 지구정지궤도의 확보가 적법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ITU 체제는 위성망의 조정에 있어서 기업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sup>21)</sup> 이에 국가와 기업이 활동 주체인 지구정지궤도 시장이 형성되고 이 시장에서는 주관청의 명의로 위성체의 국적이 거래된다. 국가가 타 국적 인공위성을 기업이 구매 또는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신의 명의로 지구정지궤도를 확보한다. 또는 기업이 자신의 국적이거나 시장 지역과 관련이 없는 주관청의 명의로 지구정지궤도를 확보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운항되고 있는 상용 선박의 절반 이상이 국적 획득에 있어서 이용하고 있는 편의치적(便宜置籍, flag of convenience)과 같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통가 왕국은 자국이 필요한 지구정지궤도의 수보다 더 많은 위성망 신청을 공개적으로 행한 최초의 국가다.<sup>23)</sup> 1993년 통가 왕국은 자국이 주관청으로 확

20) Bin Cheng,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of States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Especially by Non-Governmental Entities”, *Essays in Honour of Wang Tieya*, Ronald St. John MacDonal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4, 148면.

21) von der Dunk, Frans G. supra note 15, 446면.

22) 선박과 국적 부여 국가간의 진정한 연결관계(genuine link)의 존재를 1982년 UN 해양법 협약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치적 국적이 사실상의 관행이 된 것에 비추어보면, 우주물체와 국적 국가간의 연결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편의치적 행태는 일반적 관행으로서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편의치적에 대해서는 유병화 외 2인 공저, 『국제법 II』, 법문사, 2000년, 5면 참조.

23) 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 “Study on the Global Practices for Assigning Satellite Licences and Other Elements”, 용역보고서, 2010년11월, 56면.

보한 지구정지궤도 6개중에 한개를 미국 기업에 사실상 임대(rent)했고, 러시아에서 구입한 위성 2기를 두 궤도에 위치시켰고, 두 궤도를 경매에 부치고 나머지 1개는 사용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통가의 위성확보가 법리상 부적절하다고(“wrong in law”) 주장하면서 통가가 사용하지 않는 1개 궤도에 위성을 위치시켰다.<sup>24)</sup> 통가왕국 사례는 지구정지궤도 사전신청 및 조정절차 규정이 무력해지는 이유로서 당초에 조정 대상과 원인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던 인공위성을 기업이나 주관청이 확보하고자 하는 궤도에 상대방보다 먼저 이동시키는 최초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5)</sup>

우주물체의 국적을 불문하고 주관청이 변경되는 관행의 획을 그은 중요한 사례는 Intelsat의 민영화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이 주관청이 된 사례이다.<sup>26)</sup> 1997년 Intelsat의 회사 분리(spin-off)로서 New Skies Satellites사가 수립되어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게 되었다. Intelsat은 2000년11월 총회에서 민영화 이행방안으로 위성 자산을 별개의 법인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그 법인의 관할 소재 국가를 Bermuda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을 ITU에의 위성망 통지를 위한 주관청으로 정하였다. 그래서 미국이 22개의 위성과 그 궤도의 주관청이 됐다.<sup>27)</sup>

또한 국내법령상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이 주관청으로 등록되어 있는 위성망 사용이 허가되기도 한다. 미국 FCC는 미국 위성을 위한 궤도가 있는 경우에 대체 위성의 사용을 허가할 것이라고 위성허가 관련 규정을 제정하면서 공식화하였다.<sup>28)</sup> 또한 위 규정에서 기술적으로 동일한 위성만이 대체 위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ITU 조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위성이 대체 위성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2003년에 네덜란드 정부가 주관청이었던 New Skies의 NSS-7 위성을 대체위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바 있고, 2005년에는 당초 미국이 주관청이었다가 허가 만료후에 캐나다가 주관청이 되었던 DIRECTV 5 위성을 다시 미국 주관청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한 바 있다. 2010년에는 ProtoStar

24) Tiyanjana Maluwa, “International Law in Post-Colonial Afric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9년, 346면.

25) Ibid. 310면.

26) Intelsat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김종복 저, 『신 우주법』, 한국학술정보(주), 2011년, 124 - 126면.

27) Patricia McCormick, and Maury J. Mechanick, “The Transformation of Intergovernmental Satellite Organisations: Policy and Legal Perspectives”, Martinus Nijhoff, 2013년, 97면.

28) Amendment of the Commission's licensing rules and policies, first report and order, 18FCC Rcd 10795 2003.



사의 파산후에 Intelsat이 인수한 위성을 미국 정부가 주관청이 되는 것을 허가하였다.

요컨대 위성망 신청 절차를 통해서 지구정지궤도와 주파수를 사용할 권리가 주관청 명의로 수립되지만, 궤도상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인공위성의 국적이 주관청 국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IV. 지구정지궤도 분쟁 사례와 2차시장 거래의 법적 지위

ITU 구성조약 제56조는 ITU협정, 구성조약 및 무선규칙과 같은 행정적 규칙 등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 또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조약에 의한 해결, 또는 상호 합의한 방식에 의한 해결, 또는 ITU협정이 정한 중재절차에 따른 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sup>29)</sup> 동 조항이 분쟁 해결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며, 반면에 분쟁해결에 관한 선택적 강제 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on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에 서명한 ITU 당사국들은 ITU협정이 정한 중재절차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분쟁 해결의 당사자는 조약의 당사국, 즉 주관청이다. 그러나 지구정지궤도 확보를 둘러싼 분쟁은 아직까지는 주관청간의 해결 사례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아울러 ITU 구성조약, 협정 및 무선 규칙 등에서 사무국이 분쟁 해결에 대해서 권한 또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조항은 유해한 간섭의 경우로 한정된다. 그리고 그 경우에 사무국의 개입은 당사국의 요

29) ARTICLE 56 Settlement of Disputes.

1. Member States may settle their disputes on question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stitution, of the Convention or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by negoti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r according to procedures established by bilateral or multi-lateral treaties concluded between them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or by any other method mutually agreed upon.
2. If none of these methods of settlement is adopted, any Member State party to a dispute may have recourse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fined in the Convention.

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30)</sup> 따라서 ITU 분쟁 해결 기능은 지구정지궤도를 둘러싼 사안에 대해서 전무하다고 판단되고 있다.<sup>31)</sup>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정지궤도를 둘러싼 분쟁은 사실상 주관청만이 아니라 기업이 등장하는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 그 결과는 지구정지궤도를 거래하는 사실상의 이차 시장의 등장이다. 이차 시장의 존재는 기존의 ITU 무선규칙 및 사무국과 RRB의 역할에 따른 제도적 틀의 한계를 입증한다. 이에 본장에서 는 분쟁에서의 조정 사례를 통해서 제도적 틀의 한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 1. 분쟁 사례

무선규칙의 문언해석상 아울러 학설상 ITU는 궤도 분쟁에 대해서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며,<sup>32)</sup> 분쟁해결 관련 규정은 무력하다고 판단된다.<sup>33)</sup> 다음의 사례들은 그러한 주장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

30) 무선규칙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5.43조 § 34 1) In the case where an administration has difficulty in identifying a source of harmful interference in the HF bands and urgently wishes to seek the assistance of the Bureau, it shall promptly inform the Bureau.

제15.44조 2) On receipt of this information, the Bureau shall immediately request the cooperation of appropriate administrations or specially designated stations of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 that may be able to help in identifying the source of harmful interference.

제15.45조 3) The Bureau shall consolidate all reports received in response to requests under No. 15.44 and, using such other information as it has available, shall promptly attempt to identify the source of harmful interference.

제15.46조 4) The Bureau shall thereafter forward its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to the administration reporting the case of harmful interference. These shall also be forwarded to the administration believed to be responsible for the source of harmful interference, together with a request for prompt action. ; 관련 학설로서는 Ram S. Jakhu,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ITU Agreements", 출처

<http://swfound.org/media/48115/Jakhu-Dispute%20resolution%20under%20the%20ITU%20agreements.pdf>

31) 위 Ram S, Jakhu 논문.

32) Khi V. Thai, Dianne Rahm, Jerrell D. Cogburn 편집, "Handbook of Globalization and the Environment", CRC Press, 2007. 2. 5. 106면.

33) Lotta Viikari, "Towards More Effective Settlement of Disputes in the Space Sector", *Lapland Law Review*, 2011년, IISN 2242-3206, 231면.

## (1) 이란 Zohreh-2 위성망과 Eutelsat의 동경 25.5도 분쟁

### (가) 기초 사실

동경 26도에 이란은 10여년전에 Zohreh-2 위성망 신청을 수행한 상태였고 Eutelsat은 2013년에 동경 25.5도에 카타르와 공동으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었다. Eutelsat과 프랑스는<sup>34)</sup> 이란의 동경 26도에 대한 위성망 신청은 3년 동안 “실제 사용” 실적이 없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이란이 ZOHREH-2 위성망을 2009년5월21일 운용 휴지 이전에 주파수대역 14.0-14.5 GHz, 10.95-11.2 GHz 및 11.45-11.7 GHz 에서 정기적으로 운용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2011년7월에 사무국에 요청하였고 사무국은 이러한 요청에 대한 확인 결과 이란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 등록원부에 등록된 이란의 ZOHREH-2 위성망 신청을 전과규칙 제13.6조에 따라 삭제하였다.

이에 이란은 Eutelsat의 Eurobird 위성을 Arabsat이 임대하였고 그 중 일부를 Zohreh-2 위성망이 재임대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Arabsat의 중계기 단위가 아니라 주파수 대역의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란은 2001년~2010년 동안 대체위성으로 러시아의 GORIZONT-38, 미국의 PAS-5, 프랑스의 EUROBIRDTM2 위성을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로서는 자신이 대리하는 위성망을 상대방이 사용하여 이용실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위성망 이용계획에 대항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프랑스는 EUROBIRDTM2 위성을 ZOHREH-2 위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이란에 허용한 적도 없으며 그렇게 운용된 적도 없음을 사무국에 통보하였다.

사무국은 Zohreh-2 위성망 신청의 삭제 결정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양측에게 상호 수락할만한 이해로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고 RRB 회의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였다.

### (나) RRB의 논의와 결정

RRB는 제55차 회의(2010년11월29일-12월3일)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여

34) 국가만이 주관청 자격으로 ITU에 대표권을 가지므로 Eutelsat의 위성망 신청을 프랑스 정부가 수행했다.

Zohreh-2 위성망의 권리를 인정하되 분쟁은 당사자간의 해결에 따른다는 결정을 하였다.<sup>35)</sup> 뒤이어 열린 제56차 RRB 회의에서는 사무국의 결정에 대해서 각국의 반대와 이의가 제기되었다. 프랑스는 어느 주관청이 타 주관청의 책임하에 있는 우주국을 책임 주관청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위성망의 주파수 할당을 사용개시하였다고 통고하거나 혹은 자신의 위성망의 주파수 할당을 정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RRB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프랑스는 현행 ITU협약 및 무선규칙상 타 주관청의 동의 없이 그러한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란이 PAS-5 (26.15°E) 위성으로 2002~2008 기간 동안 ZOHREH-2 할당을 사용하여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PAS-5의 운용 주파수가 ZOHREH-2 할당 주파수와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PAS-5 위성을 이란에 대여한적도 없으며 PAS-5 위성 운용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라 함)가 인가한대로 위성을 운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서한을 제56차 RRB 회의에 제출하였다. 카타르는 향후 위성망운용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로 지구정지궤도와 스펙트럼의 합리적인 사용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EUTELSAT을 대표하는 프랑스를 지지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RRB의 재고를 요청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이란이 미국의 PAS-5와 EUROBIRODTM2를 대여하여 ZOHREH-2 위성망의 주파수 할당을 사용했다는 2004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3년6개월동안에는 사실상 ZOHREH-2 위성은 운용휴지 상태에 있었으며 이는 전파규칙 제11.49조에 규정된 운용 휴지기간 2년을 초과한 것이므로 이 위성망의 주파수할당은 주파수등록원부에서 취소되어야하며 RRB는 프랑스가 제공한 자료와 주장을 근거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다.

35) RRB의 결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ZOHREH-2 위성망의 주파수 할당에 무선규칙 제13.6조를 적용하지 않을 것과 그 위성망 신청을 등록원부(MIFR)에 그대로 유지할 것. 따라서 사무국은 이 결과에 대하여 후속조치 할 것;  
둘째, 지구정지궤도 동경 26도 주변에 여러 위성들이 운용중에 있다는 것과 조정(coordination)은 양방향이라는 것 및 무선규칙 제9조의 적용에서 사전공표나 혹은 조정절차를 위한 요청을 먼저 시작하였다는 결과로 어느 주관청이든 특정한 우선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전파규칙 제9.6호참조)을 인식하고  
셋째, RRB는 이란, 프랑스 및 사우디아라비아 주관청들에게 동경 26도 주변에서 위성망들을 운용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상의 호의와 상호존중 및 결의 2(WRC-03개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정협의를 계속할 것을 촉구함.

이러한 각국의 반대와 이의 제기에 대해서 RRB는 주관청간 조정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RRB는 지난 제55차 RRB회의의 결론들은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결정된 것이므로 모든 사항들이 함께 속행되고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동일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곧 제55차 RRB회의 결론에 입각하여 기존 위성망들의 규정적인 지위(status)를 고려하지 말고 조정회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조정 결과

외신은 Eutelsat을 대표하는 프랑스와 이란은 지구정지궤도와 주파수를 상호 조정하는데에 합의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결국 사무국과 RRB의 역할은 분쟁 해결에 있어서 관련 주관청간의 합의를 촉구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 (2) Eutelsat과 SES사의 동경 28.5도 분쟁

#### (가) 기초 사실

동경 28.5도는 Eutelsat 위성이 사용하는 궤도로서 독일의 위성방송사인 Media Broadcast가 Eutelsat 위성을 사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SES사가 2012년10월에 이 궤도에 Astra2F 위성을 발사하여 Media Broadcast의 위성방송용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에 Media Broadcast의 위성방송용 송출시장을 뺏길 우려가 발생하자, Eutelsat은 Astra 2F 위성은 1999년에 Eutelsat과 SES사가 동경 28.2도와 28.5도에 대해서 체결한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Eutelsat은 2012년 10월에 프랑스 파리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서 SES사는 동경 28.5도에 대해서는 Eutelsat이 아닌 독일 주관청의 위성망 신청이 ITU 규정에 따라서 우선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SES사는 그와 같이 우선권을 갖는 독일 주관청이 독일 국내법에 따라서 Media Broadcast에게 궤도 사용권을 허가하였다는 점, 그리고 SES사가 Media Broadcast와 2005년 합의한 바에 따르면 자신이 2012년10월4일부터 해당 궤도를 사용할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즉 SES사의 주장에 따르면 독일 주관청의 위성망 신청이 우선이며, 그 궤도의 위성은 자신이 제공하고 그 위성을 이용하는 주체는 독일 기업인 것이다.

(Media Broadcast는 2002년도에 도이치 텔레콤으로부터 해당 위성망(허가권 포함)을 양도받았었다. 2008년도까지 Media Broadcast는 도이치 텔레콤의 associated였고 2008년에 TDF에 매각된 바 있다.)

#### (나) 중재 및 소송 경과

ITU의 분쟁해결방식보다는 기업은 중재재판을 선호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경우에도 양 당사자는 프랑스 파리의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재판을 신청하였다. 2013년 9월에 중재재판부는 “본 재판부가 Eutelsat이 “regulatory right”를 갖지 않는다면 SES가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중재재판부는 Eutelsat이 그러한 regulatory right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본의 민사법원 1심 법원은 Eutelsat위성이 SES사의 위 위성에 유해한 전파간섭을 발생시킨다면 운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양사는 Eutelsat위성에서 송출되는 신호(16개 중계기에 해당)를 SES사의 위성에서 송출되게 하도록 합의하고 2013년10월4일에 이전을 완료했다.

### (3) Spectrum Five사와 SES사의 서경 96.2도 분쟁

#### (가) 기초 사실

지구정지궤도의 공평한 접근을 위해서 ITU가 정한 분배 plan상 Bermuda는 서경 96.2도에 계획되어 있는 32개의 BSS채널중에 16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었다. 이 분배 Plan에서 16개가 아닌 32개를 BSS용으로 버뮤다가 사용하겠다는 변경 신청, Bermudasat-1 위성망신청을 버뮤다 정부를 대리하여 영국이 ITU에 제출하였다. 이 위성망 신청의 접수일은 2005년4월15일이며 따라서 2013년4월14일까지 궤도가 사용되어야만 그 위성망 신청이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삭제될 수 있다.

버뮤다 정부는 위 위성망 신청의 삭제를 막기 위해서 룩셈부르크 소재의 SES사와 협의했고 SES사는 미국의 EchoStar사와 협의하여 미국 국적 위성인 EchoStar 6호를 영국이 위성망 신청한 그 궤도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결

정 당시에 EchoStar 6호는 서경 76.8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에 EchoStar 6호 위성이 이동하여야 했다. 반면에 네덜란드 소재의 Spectrum Five사를 대표하여 화란 정부가 2011년도에 서경 95.15도에 BSSNET3-95W 위성망의 위성망 신청을 하였다. Spectrum Five사로서는 자신이 이용하려는 위성망 신청에 따른 궤도에서 위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Bermudasat-1 위성망 신청에 따른 위성망과의 간섭이 없어야만 했고, 이를 위해서 2013년4월14일까지 Bermudasat-1 위성망 신청에 따른 궤도가 사용되지 않으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 했다. ITU에 그러한 삭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Spectrum Five사는 삭제 요건중의 하나인 “송출 및 수신 능력의 미확보”가 정부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 위성의 궤도 변경에 관한 미국 국내법상의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삭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했다. 즉 Spectrum Five사는 미국 국적 위성인 EchoStar 6호 위성이 서경 96.2도로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국 국내법상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이하 “FCC”라 함)의 궤도 변경허가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필요했다. 한편 EchoStar사는 위성 궤도변경신청 절차를 2013년2월 당시 아직 개시하지 않았었고, 통상적인 행정절차 소요일상 2013년4월14일까지 궤도변경 허가는 부여될 수 없었다. 이에 EchoStar사는 긴급한 경우, 또는 실험용 무선국 등의 사용에 대해서 임시로 특정된 기간 동안만 사용을 허가하는 특별임시허가(Special Temporary Authorization, 이하 “STA”라 함)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여 2013년2월20일에 FCC에 STA를 신청하였다. 이에 Spectrum Five사는 Bermudasat-1 위성망 신청이 BSSNET3-95W 위성망 신청보다 우선권을 갖기에 자사의 위성이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으며 두 위성의 궤도상 위치가 가까우므로 동시에 운용될 수 없다며 미국 FCC에 STA 허용에 반대하는 이의(petition)를 접수시켰다.

한편 미국 DirecTV사도 STA 허용에 반대하는 이의를 접수시켰다. 미국 소재 DirecTV사는 Bermudasat-1 위성망 신청이전에 서경 101도 근처에서의 Plan 변경 신청을 ITU에 개시하여, 영국의 Bermudasat-1 위성망 신청이전에 완료되어 영국의 위성망 신청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주관청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다. 다만 DirecTV 9S 위성망 신청은 영국의 위성망 신청보다 늦었기에 보호

받는 지위가 아니었다. 그러나 EchoStar사와 DirecTV사는 간섭문제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였고 그 결과를 FCC에 통보하면서 DirecTV사는 반대를 철회하였다.

미국 FCC는 EchoStar사와 DirecTV사의 합의 결과를 고려할 때에 해당 지역의 위성방송 수신에 끊기지 않아야 할 긴급한 상황이 존재함을 인정한다고 판단한다면서 STA를 부여하였다. FCC는 Bermudasat-1 위성망 신청과 EchoStar사에 대한 STA 부여의 문제간에는 그 판단 기준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Spectrum Five사와 화란 정부의 우려는 영국 정부 및 화란 정부간에 해결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하였다.<sup>36)</sup>

2013년9월3일 ITU는 Bermudasat-1 위성망 신청을 등록원부에 등재하였다.

#### (나) 국내법상 소송 경과

Spectrum Five사는 FCC의 결정이 재량 일탈로서 STA 처분 무효를 청구하는 소를 미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은 이의 제기의 사유가 치유되면 피해가 보전되는가의 기준을 택하였다. Spectrum Five사는 EchoStar 6호를 영국 정부가 Bermudasat-1 위성망 신청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반대하고 EchoStar 6호의 STA를 부여안하면 ITU가 영국이 위성망 신청에 따라서 위성을 이용한다는 계획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Spectrum Five사는 ITU 무선규칙 제11.44B가 규정하고 있는 위성망의 사용여부의 판단 요소인 송출 및 수신 능력(capability) 필요한 정부 허가의 획득 여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으나,<sup>37)</sup> 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기술적 능력을 말한다고 판단하였다.<sup>38)</sup>

정부 허가에 대해서 Spectrum Five사는 ITU의 2013년 1월자 회원국들에 보낸 서신에서 “ITU는 위성운용자가 해당 주관청에 신청하였는지를 물을 수도 있다”고<sup>39)</sup> 밝히고 있으므로 정부 허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36) FCC Bureau Order, 28 FCC Rcd at 4229.

37) 무선규칙 제11.44B “A frequency assignment to a space station in the geostationary-satellite orbit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brought into use when a space station in the geostationary satellite orbit with the capability of transmitting or receiving that frequency assignment has been deployed and maintained at the notified orbital position for a continuous period of ninety days.”

38) Spectrum Five LLC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July 11, 2014758 F.3d 254.

39) “the ITU may request “the satellite network operators’ license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on.”



법원은 Spectrum Five사의 주장은 ITU 서신의 문맥상 의미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즉 ITU는 2012년5월에 회원국들에 보낸 서신에서 위성임차인 경우에 주 관청은 타 주관청의 책임하에 있는 우주국을 사용하여 자신의 위성망 신청상의 위성망을 사용할 수 있고, 우주국을 책임하에 두고 있는 주관청은 그 우주국의 사용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반대할 수 있고, 반대가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는 바, 문맥상 여기서 주관청이 발부하는 허가증을 ITU가 요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지 조사용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90일 이후에 반대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Spectrum Five사가 ITU에 문의한 결과, ITU가 보낸 답신에서 그러한 문맥이 더욱 잘 드러나므로 허가증 요구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답신에서 “ITU는 국내법에 따른 규제 제도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위성의 임대사용에 대해서 사무국은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해당 주관청이 송부한 정보 및 국제적 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 중요한 것은 ITU에 등재된 주파수와 궤도를 사용하는 우주국을 두고서 특정 주관청이 자신이 아닌 타 주관청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에 사무국은 해당 주파수와 궤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사무국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예컨대 주어진 유효 기간내에 위성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위성망은 등록원부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40)</sup>

요컨대 ITU는 주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해당 우주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결국 FCC가 STA를 부여하는가의 여부는 ITU가 영국의 위

40) Spectrum Five LLC 사건

“ITU stated that it “is not in a position to act upon and has no direct involvement in the regulatory and legal frameworks internally established by an administration,” and that “[i]rrespective of the outcome of the USA court case referred to in your telefax, the Bureau’s consideration of the issue of satellite leasing would depend on information provided to the Bureau by the administrations involved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in force.” Id. at 2. Of significance here, the ITU stated: [R]egarding the use of a space station of another administration . . . , the Bureau is of the view that it would have no option than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on the regulatory status of a satellite network for which the recorded frequency assignments would have been brought into use by using a space station under the responsibility of another administration o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f an objection to such use is communicate’d to the Bureau by the responsible administration. Such investigation could lead to a suitable modification or proposed cancellation of frequency assignments to a satellite network from the [Master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er] for not having been brought into use within the required regulatory period, as the case may be.”

성망 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영향을 안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미국 법원은 90일 이의제기 주체는 네덜란드 정부인 바, 본 사건의 결정에 따라서 이의 제기자의 피해가 치유될 가능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Spectrum Five사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Spectrum Five사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따라서 FCC의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 2. 지구정지궤도 2차시장 거래의 법적 지위

“2차시장(secondary market)”이라는 용어는 주로 주식거래에서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거래된 주식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그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그래서 2차시장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 경우는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해서 특정 재화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그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여, 그리고 정부 규제가 제한하지 않는 시장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위성용 궤도와 주파수도 이에 해당하며 예컨대 미국 FCC가 2003년에 지구정지궤도 및 주파수 허가제도를 개정하여 주파수의 양도를 허용하여 사업자간의 위성중계기 또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언론과 학설은 위성 주파수의 2차시장이라고 간주한 바 있다.

### (1) ITU의 등록원부 관리권의 한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등록원부에 등재된 주파수를 삭제함에 있어서 ITU의 사무국과 주관청은 합의하여야 하고,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 RRB는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Zohreh-2 위성망 사건에서 ITU의 RRB는 위성망의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 주관청인 이란이 사용한 실적을 입증하지 못하자 등록원부에 삭제하면서 무선규칙 제13.6조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이란이 중계기 단위가 아닌 주파수 대역 단위로 사용한 실적을 주장하자, RRB는 제 13.6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간의 조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업무를 한정했다.

무선규칙 제13.6조의 문언 해석상 RRB의 결정권은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등록원부에 등재된 지구정지궤도를 사무국이 관리함에 있어서, 첫째, 등재된 지

구정지궤도의 주관청이 불응하거나 사무국과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을, 둘째, 주관청과 사무국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수정 결정을 RRB가 취할 수 있다. 그러나 Zohreh-2 위성망 사건에서 RRB는 두번째 경우의 결정이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삭제 또는 수정이 아니라, 아예 제13.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결국 무선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RRB가 그 집행 및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 사례에 속할 수 있으나, 개별 사건에 대한 RRB의 결정이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기판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RRB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에<sup>41)</sup>, 나름대로의 합리성은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ITU 무선규칙상 위성망 거래의 지위

Zohreh-2 위성망 사건에서 RRB의 결정은 타 주관청의 위성망 신청(Eutelsat의 위성망 신청)에 따른 지구정지궤도와 주파수를 이용하는 타국 국적의 인공위성(Arabsat의 인공위성) 중계기의 일부 주파수를 제3의 주관청의 위성망 신청(이란의 Zohreh-2)이 이용하는 것이 무선규칙상의 위성망 이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합법임을 인정할 것과 같다. 요컨대 RRB는 그와 같이 주관청간의 위성망 거래가 합법임을 인정할 것이다.

## (3) 당사자간 거래의 합법성

Spectrum Five사 사건에서 RRB는 특정 국적의 인공위성(미국의 EchoStar 위성)이 타국의 위성망 신청(영국의 Bermudasat-1 위성망 신청)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인공위성의 국적 국가의 국내법상에 따른 허가는 ITU의 무선규칙의 적용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위성망 거래에 대한 국내법 영역과 ITU 무선규칙의 규율 영역은 서로 분리된 것이고, 그래서 두 규범간의 상충은 상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경 28.5도를 둘러싼 Eutelsat과 SES사간의 분쟁 사건은 국제 중재재판 및

41) RRB 관계자는 Avanti Communications 사건에 대해서 개별 사안에 대한 ITU의 결정은 일반화될 수는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http://www.spacenews.com/article/satellite-telecom/32402itu-rules-for-avanti-in-frequency-dispute-with-ses>.

독일 국내법에 따른 판결에 따라 해결된 사례로 ITU의 규범과 비ITU의 규범이 공존하는 한 사례를 보여준다.

## V. 결 언

2010년 5월에 무궁화 위성 3호는 홍콩 소재 기업에 매각되었다. 소유주였던 한국통신은 전과법에 따라 무궁화위성을 사용하여 Ku 밴드 및 Ka 밴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주파수 할당)받은 바 있고, 무궁화 위성 매각은 Ka 밴드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한국통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부여된 허가조건 위반이며, 이에 Ka 밴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주파수 할당)가 취소되었다.

무궁화 위성 3호는 대한민국을 주관청으로 ITU에 접수된 동경 116도에서 Ka 밴드를 이용하는 위성망 신청이 “사용되고 있다”(brought into use)는 실제 증거였으나, 위 매각으로 인해서 2010년 5월 이후에는 위 위성망 신청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파푸아 뉴기니아 정부는 이에 해당 궤도의 대한민국 위성망 신청이 삭제되어야 함을 ITU에 서신을 통해 주장하였다. 한편 무궁화 위성 3호를 구입한 홍콩 소재 기업은 동경 116.1도에 무궁화 위성 3호를 위치시켰다. 이에 파푸아 뉴기니아를 비롯하여 어떤 주관청이던지 동경 116도에서 Ka 밴드를 사용하는 위성망 신청을 ITU에 접수하여 궤도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홍콩 소재 기업이 구입한 무궁화 위성 3호를 자신의 주관청 명의로 동경 116.1도에서 동경 116도로 옮기면 최소의 비용을 소요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주관청 명의로 동경 116도의 Ka 밴드 이용권이 삭제된다.

앞에서 살펴 본 사례에서와 같이 ITU의 무선규칙상 또한 RRB의 방침상 인공위성과 궤도의 그러한 거래는 위법이 아니다. 무궁화 위성 3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더라도 홍콩 소재 기업이 다른 주관청과 합의하여 그 주관청 명의로 위성망 신청하여 무궁화 위성 3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무궁화 위성 3호의 매각이 국내법 위반이어서 매각계약 자체가 무효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동경 116도의 Ka 밴드 이용권은 ITU가 주관하는 분양시장이 아니라 ITU가 등기소 역할만을 하는 장외시장에 나온 매물이다. 따라서 국가간 외교경로를 통한 지구정지궤도의 확보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선점 매입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그에 기초하여 거래를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권영모, “The Review of ITU Registration for Koreasat”, 『항공우주법학회지』,  
1995년 제7호
- 김종복 저, 『신 우주법』, 한국학술정보(주), 2011년
- 유병화 외 2인 공저, 『국제법 II』, 법문사, 2000년

### <외국문헌>

- Bin Cheng,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of States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Especially by Non-Governmental Entities”, Essays in Honour of Wang Tieya, Ronald St. John MacDonal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4
- Guy Lafferranderie, “The United States Proposed Patent in Space Legislation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pace Law, Vol. 18, No.1, 1990,
- Hanneke Louise Van Traa-Engelman, “Commercial Utilization of Outer Space: Law and Practic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299면
- Khi V. Thai, Dianne Rahm, Jerrell D. Cogburn 편집, “Handbook of Globalization and the Environment”, CRC Press, 2007. 2. 5.
- Lotta Viikari, “Towards More Effective Settlement of Disputes in the Space Sector”, Lapland Law Review, 2011년, IISN 2242-3206
- Mary B. McCord, “RESPONDING TO THE SPACE STATION AGREEMENT: THE EXTENSION OF U.S. LAW INTO SPACE”, 77 Geo. L.J. 1933, Georgetown Law Journal, June, 1989
- Patricia McCormick, and Maury J. Mechanick, “The Transformation of Intergovernmental Satellite Organisations: Policy and Legal Perspectives”, Martinus Nijhoff, 2013년
- Tiyanjana Maluwa, “International Law in Post-Colonial Afric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9년

von der Dunk, “Towards ‘flags of convenience’ in space?”, IISL-ECSL Symposium, Vienna (March 2012). Proceedings

**보고서 및 판결 등**

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 “Study on the Global Practices for Assigning Satellite Licences and Other Elements”, 용역보고서 , 2010년11월

FCC Bureau Order, 28 FCC Rcd at 4229

FCC Amendment of the Commission’s licensing rules and policies, first report and order, 18FCC Rcd 10795 2003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Space stations and the law : selected legal issues”, Congress, NTIS order #PB87-118220, 1986년

Spectrum Five LLC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July 11, 2014758 F.3d 254

## 초 록

지구정지궤도는 위성통신과 방송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ITU 체제가 그 관리의 중심이다. ITU 체제는 지구정지궤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관청의 사전신청 및 조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ITU 사무국과 RRB는 등록원부 등재 및 삭제를 통해서 정지궤도 이용권을 관리하고 있다. 등록원부에 등재된 위성망 정보는 관련 주관청과의 조정의 결과에 따라서 그 지위가 달라진다. ITU 무선규칙은 위성망 정보를 등재한 주관청이 실제로 위성을 운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등재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도록 하여 지구정지궤도가 필요한 주관청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망을 신청하는 주관청 국가의 국적과 지구정지궤도에서 실제로 운용되는 인공위성의 국적이 같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위성망을 신청한 주관청 국가와 인공위성간의 연결관계에 관한 규정도 없고, 주관청과 위성망 소유 기업간의 연결 관계에 관한 규정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정지궤도를 둘러싼 분쟁은 사실상 주관청만이 아니라 기업이 등장하는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 그 결과는 위성 궤도를 거래하는 사실상의 이차 시장의 등장이다. 이차 시장의 존재는 기존의 ITU 무선규칙 및 사무국과 RRB의 역할에 따른 제도적 틀의 한계를 입증한다. 예컨대 RRB는 제13.6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간의 조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업무를 한정만 하고, 주관청간의 위성망 거래가 합법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ITU의 무선규칙상 또한 RRB의 방침상 인공위성과 궤도의 그러한 거래는 위법이 아니다.

무궁화위성 3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더라도 홍콩 소재 기업이 다른 주관청과 합의하여 그 주관청 명의의 위성망 신청하에 무궁화 위성 3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무궁화 위성 3호의 매각이 국내법 위반이어서 매각계약 자체가 무효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동경 116도의 Ka 밴드 이용권은 ITU가 주관하는 분양시장이 아니라 ITU가 등기소 역할만을 하는 장외시장에 나온 매물이다.

**주제어** : 지구정지궤도, 무궁화위성, ITU, 2차시장, 전파간섭



## Abstract

### Legal status of Private Transaction Regarding the Geostationary Satellite Orbit

Shin, Hong Kyu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Member States of ITU in the domain of international frequency management of the spectrum/orbit resource are incorporated in the Constitution and Convention of the ITU and in the Radio Regulations that complement them.

These instruments contain the main principles and lay down the specific regulations governing the major elements such as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 administrations in obtaining access to the spectrum/orbit resource, as well as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se rights by recording frequency assignments and, as appropriate, any associated orbits, including the geostationary-satellite orbits used or intended to be used in the Master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er (MIFR)

Coordination is a further step in the process leading up to notification of the frequency assignments for recording in the MIFR. This procedure is a formal regulatory obligation both for an administration seeking to assign a frequency in its network and for an administration whose existing or planned services may be affected by that assignment.

Regulatory problem lies in allowing administrations to fulfill their “bringing into use” duty for preserving his filing simply putting any satellites, whatever nationality or technical specification may be, into filed orbit. This sort of regulatory lack may result in the emergence of the secondary market for satellite orbit.

---

\* Professor, College of Law, Kookmin University

Within satellite orbit secondary market, the object of transaction may be the satellite itself, or the regulatory rights in rem, or the orbit registered in the MIFR. Recent case of selling the Koreasat belongs to the typical example of orbit transaction between private companies, the legality of which remains doubtedly controversial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space law as well as international transaction law. It must be noted, however, that the fact is the Koreasat 3 and its filed orbit is for sale.

**Key Words** : geostationary satellite orbit, ITU, Koreasat, secondary market, interference